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8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한정애·박지원·민병덕

김영배 · 김현정 · 정성호

부승찬 • 민형배 • 주철현

허종식 • 이기헌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, 영향평가,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, 외교통일위원회·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,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

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,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 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9조 등).

법률 제 호
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통상 관련 특별위원회"를 "관련 위원회"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"를 "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"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"통상조약"을 "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상조약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"를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"를 "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"를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"를 "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보고 및 서류제출) ① 정부	제5조(보고 및 서류제출) ①
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·산업	
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	
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	-관련 위원회
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	
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	
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	
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	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	제6조(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
및 보고) ① (생 략)	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	②
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	
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	
<u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</u>	-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
<u>회</u> 에 보고하여야 한다.	원회 및 관련 위원회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	제9조(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
타당성 등 검토) ① 산업통상	타당성 등 검토) ①
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	
이전에 <u>통상조약</u> 체결의 경제	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

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(생 략) <신 설>

제10조(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) ① (생략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상의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1. ~ 3. (생략)

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
고려하여 통상조약
② (현행과 같음)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
 검토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
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
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
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(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
제10조(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 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산</u>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산</u>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산</u>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산</u>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
의 의견제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산</u>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

-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 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 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협상결과의 보고 등) ①
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
 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
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
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
 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
 다.

② (생략)

- 제15조(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②·③ (생 략)

	③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
	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
	<u>,</u>
제	12조(협상결과의 보고 등) ① -
	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
	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
	· ② (현행과 같음)
제	15조(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
,	가 및 보고) ①
	사어 돈 사기 이 즈 ㅅ 베 키
	<u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</u>
	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
	1 4 (취외가 가수)
	1. ~ 4. (현행과 같음)
	②·③ (현행과 같음)